

## 2025년도 CCUS(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) 진흥센터 구축 시행계획 공고

CCUS 기술의 보급 및 확산 촉진을 위한 「CCUS(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) 진흥센터 구축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4. 22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# 1. 사업 개요

#### 가. 사업목적

- 관련 근거\*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 조성
- \*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(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)

#### 나. 사업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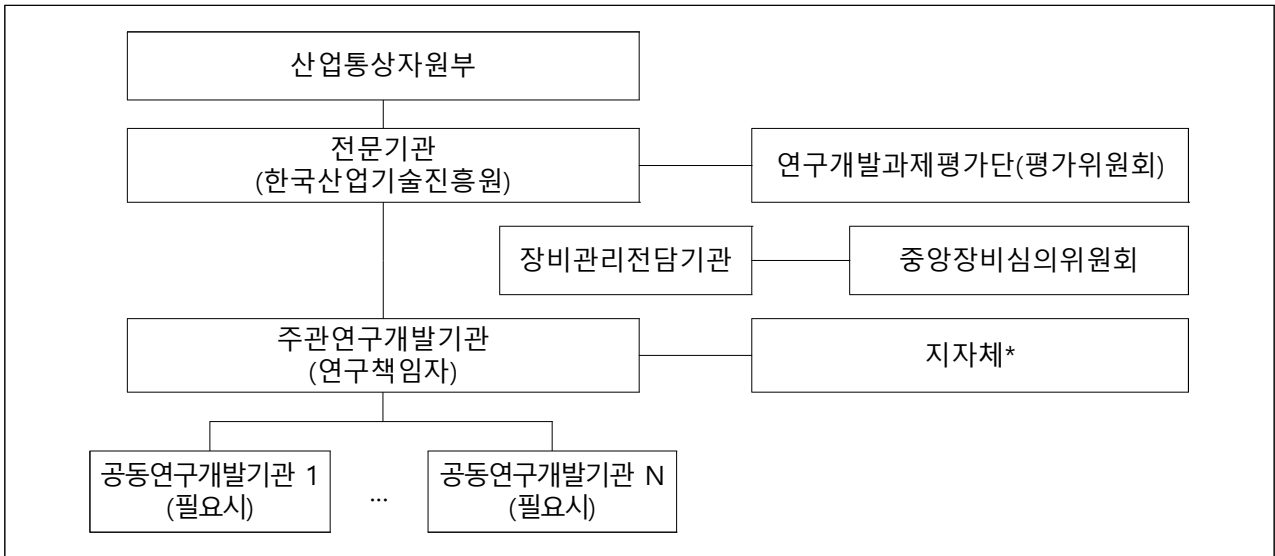
- 지원분야 : 기반조성(비R&D)
- 지원규모 :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4억원 이내('25년도 2.90억원)
  - \*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기간 : 2025~2027년 이내(3년 이내)
  - \*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('25.5월~'25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- 공모방식 : 지정공모
- 지원과제 : CCUS 진흥센터 구축 1개 과제
  - \*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## 2. 지원 내용

### 가.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 :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61조(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)에 따라 다음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&lt;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&gt; 제61조(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)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"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</li> <li>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</li> </ul> </li> <li>2.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,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것</li> </o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연구기관, 대학 등 비영리법인*</li> <li>*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</li> </ul>
지원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</li> <li>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연구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% 이내로 산정</li> <li>○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: 총연구개발비(건축비 제외)의 30%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</li> <li>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[별표 4] 참조</li> <li>*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,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(국비 매칭금 30억원+건축비 20억원) 이상 편성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토지·건물·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관부담연구개발비,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(매입) 및 현물(임차)로 산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% 이상으로 하며,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</li> <li>○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, 별표6, 별표7</li> <li>*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</li> </ul> </li> </ul>
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% 이내로 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정인건비 : 인건비(현물 포함) 및 학생인건비 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</li> <li>* 향후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
간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이내로 산정</li> </ul>
기술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징수</li> </ul>
보안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과제</li> </ul>

## 나. 추진 체계



\* 지자체 :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·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자원 부담

## 3. 지원제외 처리기준

구분	내용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○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(RFP)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기존과제와의 중복성	○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참여제한 여부	○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의무사항 불이행	○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참여율 및 참여과제수	○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○ 다만, 타사업 지원시에는 동 과제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(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) 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
*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「6. 관련법령 및 규정」에 따름	

## 4. 평가절차 및 기준

### 가. 지원절차 및 일정

주요내용	추진기관	일정
사업 공고	산업통상자원부	'25. 4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5. 5
사전검토	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5. 5
선정평가	연구개발과제평가단	'25. 6
연구개발기관 확정	산업통상자원부	'25. 6
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'25. 6
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연구개발기관	'25. 6~

\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나. 평가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목적 명확성 (20)	사업목표 명확성	○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
	사업목적 적합성	○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(RFP)와의 부합성 및 구체성
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(25)	추진체계 적절성	○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, 협력체계 적정성
	기반구축 역량	○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○ 전담조직 구성,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 계획의 적정성 ○ 사업 수행 역량(기존 관련 연구시설·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) ○ 기구축 연구시설·장비의 활용 실적
사업내용 적정성 (35)	추진전략 적정성	○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○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○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
	장비구축 타당성	○ 연구시설·장비 구축계획 구체성(종류·사양, 장비 등) ○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○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
	연구개발비 적절성	○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,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○ 지자체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·현물 투입계획 적정성
성과확산 효과 (20)	사업지속 가능성	○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○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,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
	파급효과	○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·기관 수,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

\*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

## 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 가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접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. 4. 22. 09:00 ~ 2025. 5. 21. 18:00</li> </ul>
접 수 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IAT 과제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)에 온라인 등록</li> <li>※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</li> </ul>
서식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kiat.or.kr">www.kiat.or.kr</a>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</li> <li>- 홈페이지 → 사업·자료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</li> </ul>
접수절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통합회원가입)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</li> <li>(온라인 등록)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,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</li> <li>(파일 업로드)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, KIAT 과제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) 업로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</li> <li>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(최종제출)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<b>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</b>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,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</li> </ul> </li> </ol>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)</li> <li>접수 마감일 17:59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</li> <li>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/li> <li>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</li> <li>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<u>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</li> </ul> </li> <li>필요시 온·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li> </o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)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</li> </ul>

## 나. 제출서류

순번	제출서류	파일형태	필수여부	대상
1	연구개발계획서	HWP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
2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3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4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5	지자체의 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	PDF	해당시	지자체
6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	PDF	해당시	해당기관
7	전용공간 확보계획서	PDF	필수	해당기관
8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9	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적용 대상 사업임
-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\*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

\*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

-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
-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, 진도점검·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
- 평가항목 내용 중 '기구축 연구시설·장비의 활용 실적'은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,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, 활용건수,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\*를 평가시 반영

\* i-Tube(www.itube.or.kr)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(별도 제출 불필요)

- i-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(공동활용서비스 장비)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, 활용건수, 활용기관수(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)

- 기타 사항은 「7. 관련법령 및 규정」을 따름

## 7. 관련법령 등

### 가. 근거법령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
### 나. 관련규정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  -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  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  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  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\*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## 8. 문의처

- 소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(044-203-5151)
- 전문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연구원  
(02-6009-3485)
-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-PASS 유지보수팀  
(02-6009-4319, 4320, 4322)